

가해자 실명공개의 원칙

2021.7.6

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를 '언어화' 하는 것. "나는 저 놈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차원의 가해자 실명공개는 정당한 것이다. 특히 가부장적 은폐구조를 가진 운동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 실명공개' 이외에는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 가해자 실명공개는 매우 적극적은 해결의 의지이며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합당하는 실질적인 과정이다.

가해자 실명공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뒷소문처럼 번져가는 비사실화를 막고 '사실'로서의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다. 가해자 실명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해자만 알고 가해자는 없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피해자는 오로지 사건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것은 가해자 실명공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지닌다.

가해자 실명공개는 짐체적 피해자를 보호한다. 체벌율이 높은 성폭력 가해자들을 공개함으로써 짐체적 피해자기 될 수 있는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가해자와 관계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짐체적 피해자의 권리 존중하고 더 나아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한 방별이다. 또한 가해자의 행동반경의 제약을 통해 피해자의 생활권을 보장한다. 많은 경우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공동체를 떠나거나 잠적하게 된다.

이것은 가해자가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가해자 가 아니라 피해자이다.

가해자 실명공개는 결코 사건 해결의 완성이거나 저널리스트이나 언론사의 과정이나 저널리스트나 언론사의 권리이다.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과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강도와 강도 당한 사람의 인권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듯이 가해자의 인권을 피해자와의 인권과 비교해서 논의할 수는 없다.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이지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가해자의 인권보호를 외치는 것인가.

학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을 비추어 보면, '사건공개'가 초기에 가장먼 복목은 성폭력을 개별적 우발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초기 사건공개는 피해자인 여성들의 빛 인권을 확보하는 전략이며, 철학적으로 사건을 밝혔을 때 '피해' '사실'임을 인정받아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문을 쓰는 경우에도 공동체에 피해를 주어 미안하다라는 식의 공동체를 끌어기제를 삼는 식으로 사건을 넘어가려고 한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를 자신의 공간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고 재교육 이수를 통해 또 다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현재 학내여운단위에서 취하고 있는 '비대위'라는 형식은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정 방식 가해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의 발언을 배제하거나 환의 없이 사건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대위'를 가해자가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주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를 공개했으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가해자 인권의 문제

'오히려 피해를 입는 가해자?'

지난해 11월 충여학생회 선거를 치르면서 학내 언론사들과의 경쟁 간담회 자리에서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나친 피해자 위주의 사건 처리로 오히려 피해를 입는 가해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성폭력 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최근 유·핵처벌 번지고 있는 것이 소위 '가해자 인권론'이다. 이 가해자 인권론은 구체적으로는 위의 질문과 같이 파벌 동아리 등에서의 가해자 통제론, 응호론으로 펴져있으며 담론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나 단체의 장 등이 가해자인 경우 명예훼손 역고소라는 명백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경험적 가치로서의 인권

가해자 인권론이 사용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은 구성되고 생취되는 경험적, 과정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제 권리와 관계없이 추상적, 초월적으로 선제 하는 당위적 개념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인권을 갖는다는 근대적인 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급진적인 동시에 대단히 문제적인 아이디어이다. 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지향으로서의 이상적 가치이지 현실이 아니다. 인권 담론은 다른 사회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제재, 성별, 인종, 나이 등 경제성을 둘러싼 자세적 담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므로 인권은 언제나 예상대로 일치 세력들의 투쟁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정의, 재구성되는, 괴역암시의 개념이다. 인권이 구성되는 이

한 사회적인 맥락을 제거하고 보편적인 인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지배 세력의 시작에서 구성된 입장이 마치 전체 인간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강자의 권리 수단으로 사용된다.

성폭력을 둘러싼 담론 권리

성폭력 가해자 인권론은 인권을 경험적 가치로 사고하지 않는 보편적 인권론의 험구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성폭력을 대하는 시선은 여전히 피해여성의 전술보다는 가해 남성의 주장을 신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폭력은 범죄 사실이 인지, 인정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 절도 등의 다른 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 '왜 그때 그 자리에서 돈을 갖고 있었는지' '아무리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완강히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묻지 않지만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게 던져지며 피해 사실의 객관성을 끊임없이 의심받는다. 이 것은 성폭력을 둘러싼 피해 여성의 인권과 가해 남성의 권리가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여성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자체만으로 주변에서 가하는 피해사실에 대한 의심과 문제제기를 무화시키려는 압력 등,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된다. 애초에 성폭력은 성별 위계화 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억압을 '폭력'으로 명령하고 가시화한 것이지만, 성폭력을 사실로 구성하고 인정 받는 과정 자체도 성별 위계화 된 담론권력으로부터 압박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성폭력 가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피해여성을 괴롭히는 행위를 가해자의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인권론은 성폭력을 둘러싼 이런 사회적인 맥락을 삭제한 체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에 편승한 가해남성의 2차 가해 행위를 보편적인 인권 개념으로 옹호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성폭력 개념과 성폭력 사건의 객관성은 범의 영역에서나, 일상의 영역에서나 모두 여성의 입장이 아니라 남성의 경험과 이해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2000년이 넘는 성별 권리 관계의 이러한 역사성을 무시한 체, 피해여성의 인권과 가해 남성의 권리가 경험하는 상황에서 남성의 특권을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인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삭제되는지를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

위 글의 내용은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2003. 한울 아카데미 출 <인권, 보편성과 특수성의 경계라?- 여성주의 시작에서 본 인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왜 '피해자 중심주의' 인가

성폭력 눈에 있어서 '피해자중심주의'가 원칙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성폭력으로 개념 규정한 있어 피해자의 경험과 주관에 따르며, 피해자의 해석을 가장 신뢰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왜' 피해자 중심주의가 중요시 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말해 이 사회가 얼마나 가해자 중심의 사회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을 접한 주변인들이나 공동체, 나아가서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까지도 피해자의 말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여러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성폭력 사건을 두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2차 가해, 즉 가해자를 대변하려 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거나 비난하는 주변인들에 의한 가해가 그것이다. 또한 규정이나 법 체계 안에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 성폭력임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도 피해자 중심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인적 없는 곳에서의 절도, 협박, 아리랑 치기, 안기부 고문 등 딱히 증거나 증인이 없고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은 성폭력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즉 어떤 면에서 모든 범죄가 다 '특수'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에서만 유독 피해자 의심이 당연시 되는 것은 남성의 경험을 '보편'으로 간주하는 권리의 효과다. 수많은 '증거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사기관이 많은 경우 '자백한 받는 수사'를 했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유동 성폭력 사건에서만 '증거, 증인의 부재와 진술 배치'가 부각되어왔던 이유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성폭력 사건은 '그 정도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 정도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기 어렵다'는 수사 기관, 사법 기관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증거'로 인정하는가, 어떤 내용과 어떤 사건을 갖춘 진술을 '신장성 있는 진술'로 봄이 들어는가 자체가 성별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진화 경...: "피해자 중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가능한가", 「성폭력은 다시 쓴다」, 한울

따라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와 더불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 여겨지는 남성의 언어와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피해를 설명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 받기 힘든 상황이 된다. 이것이 바로 가해자 중심의 사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다. 허구적인 객관성으로 무장한 법, 제도, 사회통념, 언어로 이루어진 강고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은 이렇듯 결코 피해자의 언어와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는 바로 많은 경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치밀한 구조이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가 중심주의'가 그 동안 피해자에게 범죄, 심리적 기지와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피해자 중심이라는 딸 자체에만 집중해서 피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만큼 피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은 범위가 없다는 현실을 쉽게 부시하고 말이다.

사실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현실 자체가 그 동안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이 해석되고 설명되고 처리되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원김현영, 「가해 중심 사회에서 피해생존자 중심의 사건 지원이란」, 『한국성폭력상담소소식지 '나눔터'』 45호.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오해와 그로부터 비롯된 피해자 중심주의의 오용을 막기 위하여, 또한 아직도 문화/제도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가 보살핌이 있지 않은 현실 사회를 개선하기 위하여 '왜'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회복

봉준호 감독
- 공동체 밖에 있는 여성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을 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이 아닌 가해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성'을 구성 하려는, 그 자체가 성폭력적인 구조로서 기능하는 사회에서, 주변의 시선을 극복하고 일방적인 "피해자다"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다.

이와 같은 말하기의 어려움에 근본적이면서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 중 하나로, 무엇보다도 "공동체 보위"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강제하는 화해 풍물과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속해있는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이라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사건을 "내외적으로 드러내려는" 피해자의 시도가 공동체의 균간을 훼손하고,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서어진 것처럼 보여서 해당 공동체 문화를 균형을 시키려는 일종의 관리적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들은 스스로도 너무나 명백하게 문제점을 가시화하고 있다. 즉, "누구를 위한 공동체인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공동체를 위해 가해자(혹은 성폭력적 문화를 조성하는 공동체)와 화해하고 잘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식으로 공동체 회합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며, 그 공동체 자체가 피해자를 존중해야 할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 할 뿐이다. 공동체가 그러한 "수치스러운 사실"을 극복하고 다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소속원으로서가 아닌 공동체로부터 탈핵화 된 피해자의 회복을 통한 사건의 봉합이 필요하며, 그간 성폭력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과 피해 경험은 무마된다. 피해자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에게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 때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는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 여성이며, 남성 성폭력 가해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감싸주어야 할 존재로 위치 지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조직보위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또한 얼마나 성별화 된 폭력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지난 96년, 97년에 발생한 KBS 노조 간부 강xx 사건이나, 교육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은 모두 가해자가 속한 공동체의 대외적 이미지가 성폭력 사건에 의해 손상될까 우려하여 시급히 조치를 취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저점에 있어 해당 "조직"들은 하나같이 대처적으로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프락치의 소행'"으로 성폭력 사건을 왜곡시키는가 하면, 대내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서두르면서, 사건을 법정까지 끌고 가거나 고발하는 등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어서 가해자와 타협을 보자고 피해자에게 강요하며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조직 보위론"은 92년 있었던 고 윤금이씨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소위 "진보진영"이 보여준 일련의 민족주의적 봉함이나, 자신을 "국가의 수치"로 위치지음에 따라 적민자 치기의 군위안부 생

존자들로 하여금 피해경험을 말할 수 없게 만들었던 지난 50년간의 역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과 그 원인 제공은 가해자와 가해자가 속한 공동체 내부로부터 찾아져야 할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궁극적으로 공동체가 외부에 저항할 수 있게끔 하는 ("미국(일본)이 조국의 딸들을 강간하였다", "성폭력 사건을 통하여 일을 크게 만들려는 것은 운동권을 분쇄시키려는 '프락치'의 소행이다") 명분으로서의 기호로 기능하며, 그럼으로써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한편 군율되고 굽어터지는 자리를 애써 봉합하여 공동체가 썩은 상태로 옹졸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공동체의 척함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척체를 종용하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 시도의 기초적 저리가 면 것이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면서 성폭력적 문화로 인해 가시화된 "공동체의 군율"을 허술하게 매듭지으려는 것에 전지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와 언제라도 공동체로부터 벌려날 수 있는 피해자 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정으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피해자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지하는 한편 성폭력 사건이 공동체에 침입되어있는 성폭력적 사고들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는 것, 그러므로 만약에 봉합을 시도하려 한다면 앞으로도 해당 피해자는 물론 잠재적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경험 또한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화해를 종용하는 공동체 문화를 역으로 방해막이 삼아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내가 오히려 성별화 된 권력과 가부장성을 강제하는 공동체 문화의 피해자이다"라고 주장하는 가해자들이 속출하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는 이와 같은 성폭력적 공동체 문화를 단순히 "울면" 하는 존재가 아니다. 다시 말하여 성폭력 가해자는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공동체 문화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투과시키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와 같은 변명은 자신의 가해 사실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가해로 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공동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파생된 산물이 아니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또 대변하는 존재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폭력 신고 절차 안내

새터 혹은 파, 밤, 동아리 내에서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면...

성폭력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배, 동기들과 함께 있는 자리인데,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헛 내가 분위기를 깨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살신성인의 정신을 이런 뜻에서 굳이 발휘할 필요는 없겠지요. 내가 분명히 불쾌감, 불편함을 느꼈으니까요. 금지는 많았지만, 불쾌한 상황에 대한 의사표현을 해보는 게 어렵까요?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 생각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동성의 선배들과 상의해 보세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조언자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총여학생회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happyfem@yonsei.ac.kr로 메일을 보내거나 2123-3645(구내 3645)로 전화하세요. 신고 기간에는 시효가 없으니까 사건이 있는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상의 게시판 사용이나 채팅 등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인 '사이버 성폭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쓰는 행위,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 등 사이버 성폭력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을 빌미로 하여 사이버 성폭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성폭력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사이버 성폭력 생활센터>(www.cyberhumanrights.or.kr)로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발생 시간과 해당 URL 및 가해자 ID, 갑체 화면이나 갈무리한 화면 이미지 등에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등을 신고 양식에 맞게 정확히 표기하여서 신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 중 [신고] → [신고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폭력(강간, 장간치상)을 당했을 때

물리적인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수치심에 사로잡혀거나 증거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이 순간이 너무 괴롭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눈앞에 사라지길 바라더라도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를 보존합니다.

- 사건 후에 셋거나 웃을 짐아일으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증거가 인멸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곧바로 산부인·파생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가는 게 좋습니다.
- 성폭력을 당한 자리를 그대로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 사용했던 흥기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지문이 묻을 수 있으니 종이가방을 사용합니다.

2. 산부인과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 의료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여부 및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꼭 알리세요.
- 이 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를 끊어두세요.

3. 주위에 도움을 청합니다.

-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본인 자신을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일어난 여성에게 증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 제3자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연락하세요.
- 아동학대 2종 여성생체 내 성폭력상담실 : 2123-2118 helper@yonsei.ac.kr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 02-739-1300~77 fc@womenin.or.kr

4. 길고는 뿌를수록 좋습니다.

-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합니다.
- 남자경찰관이 쉽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서울 저발 경찰청 여성사 기동대 : 778-8000)
- 진술서 자체한 기록을 남기되 성폭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세에는 반(反)성폭력 학칙과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가 있습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이하 새터 내규)는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게 되는 대학 문화인 오리엔테이션과 새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터 내규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터 중의 성폭력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가 정한 '자체 규약'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터 내규를 하나의 규제 혹은 제제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새터 내규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시행해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겠지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반성폭력 학칙)은 2000년 10월에 재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이 200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 학칙은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빈번히 일어나는 학내의 성폭력을 예방하여 여성 친화적인 학내 문화를 만들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새터 내규와 반성폭력 학칙 전문은 연세대학교 충여학생회 홈페이지(www.yonsei.ac.kr/~ysfe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일'에 대한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목소리 만들기!!

- '여성노동'에 대한 관심·정보의 공유와 공동의 활동 모색을 제안합니다 -

'청년 실업 50만', '이십대 대번이 백수(이태백)'와 같은 말들은 이제 누구에게도 낯선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 '이십대'라는 말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 인 할처럼 블립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 직업을 구하는 과정이 '똑같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좁은 여성 취업문을 의식하고 제학 중에 모든 면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보다 경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통제적으로 설업률을 낮추고 싶어하는 정부의 의도와 맞물려 애초에 여성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체 함께 수치에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어렵게 취업을 한 정우라 하더라도 여성은 직장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여성에게 술을 마를 것을 강요당해도 정부는 그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같이 입사한 남성 동료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받으며 주변 적인 업무에 배치되어 결국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직장 상황, 생리 일신 출산 등에 따른 여성의 건강권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사회는 결국 여성의 지지의 위치에서 떠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가족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있을 곳은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킴으로써 여성의 직장을 떠나 혼선적이고 순종적인 전업 주부가 될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은 여성다면 사랑과 혼신으로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로 간주되어 앗기며 이중 산중의 초과 직워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절하되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노동 개편과 경제 불황은 여성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 여성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득 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의 생계를 위해 유급 노동에 종사하고,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힘풀한 자본과 비교해 여성의 노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성에게 일할 권리들'이라고 외치기에 어색할 만큼 여성은 끊임없이, 가정 안팎에서 일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일 안에서의 적극적인 권리 찾기 위하여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활동들을 돌아봅니다. 신규 여성직업관, 적장 내 성희롱, 비정규직 비공식 여성 노동자의 증가, 과정 적중의 확대, 생리 휴가 부당화 등 여성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일련의 흐름을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나 조심스럽게 자문해 봅니다. 여성의 노동을 남편 수입에 대한 보탬이나 여가활동 정도로 인식하여 생존권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문개하며 구성되었던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 위원회>,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 연대>부터 이후 여성 노동에 대한 관심을 생산하고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며 공동의 활동을 꾸려냈던 <애틤 몰리기>까지, 여성의 '일'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고자 하였던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연대체가 회비제지면서 더욱 악당한 상황이 되지는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의 일에 대하여 관심을 세워 목소리를 내고자 하여도, 남성 노동자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노동'에 대한 거대 디스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혹은 충돌하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나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여성주의자들의 관점을 속에서 어렵게 얼개를 잴어야 잡아 풀어야 할지 난감했던 일들, 많은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5월 1일, 다시금 다가오는 노동절을 바라보며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기존의 노동 디스크에서 주목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못했던 여성의 노동, 일, 삶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자료를 축적하며 참가자적으로는 공동의 실천들을 벌여나갈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거리적 한계들로 인하여 커뮤니티상에서의 공유부터 시도하고자 합니다. 당장 메이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각 단위의 여성주의자들이 각자 준비하고 있는 자료, 선전물, 자료집, 선전 방식 등의 정보를 커뮤니티에 올리면 서로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음을 물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로의 관심의 차이를 확인하고 지향점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동의 실천 방식을 모색하면서 새로이 여성의 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발언하는 여성주의자들의 연대체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여성주의로 쉬는 마을, 언니네>에 커뮤니티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여성의 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관심을 정원해나가는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활발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